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규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규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윤영희, 이상욱, 이성배,
이희원, 최민규, 허 훈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미국과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,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이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.
-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중기복무,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장료 감액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(안 제9조제3항제1호)
- 나.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호다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다목 중 “자 :”를 “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 :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
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
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
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
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
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
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
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
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라. ~ 바. (생략)

2. ~ 5.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----.

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-----

--- 자, 「제대군인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
1호에 따른 제대군인 : --

-

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9조(입장료)	△	제대군인 대상 입장료 50%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수혜대상(Q)에 대한 정보가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⇒ 다만, 간접적 산출을 통한 자체추계 시 연평균 12,584천원 ¹⁾ 감소예상
2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	△	제대군인 대상 사용료 30%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수혜대상(Q)에 대한 정보가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⇒ 다만, 간접적 산출을 통한 자체추계 시 연평균 36,664천원 감소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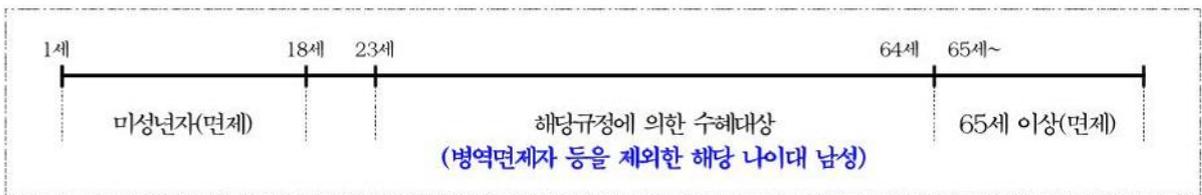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9조(입장료) 및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에 따른 세입감소액은 비용추계를 위한 수혜대상(Q) 정보가 적어 현 시점²⁾에서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
- **[규정의미]³⁾** 인용법령인 「제대군인법」에 따르면 장기, 중기,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를 의미하며 해당규정은 이들에 대한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

※ 수혜대상 추정



주 : 통상 전역 첫 해인 23세부터 64세까지의 남성 중 병역면제 등을 제외한 자(가정)

자료 : 재정분석담당관 작성

- 1) **[입의가정에 따른 정합성 오류가능성 존재]** 본 추정금액은 전제요소를 입의로 가정하여 대략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수혜대상 수, 수혜대상의 이용률 등에 따라 실감소액과 추계액 간 낮은 정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
⇒ 따라서 해당금액은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- 2) **[사유서 작성일]** 2025. 4. 7.(월)
- 3) **[규정의미]**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역(보충역 포함) 외 전직군로역 및 병역면제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
1. “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[퇴역·면역(免役)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 사람을 말한다
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제대군인 대상 서울시립체육시설 입장료/사용료 감면에 의한 세입 감소액을 추정하려면 우선 규정의 의미를 파악하고, 그에 따른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통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국가보훈부⁴⁾ 및 서울시 관련부서의 경우 **별도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간접적 산출을 통한 금액추정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**

- [자체추정 금액] 간접적 산출을 통한 자체 추계 시 **총 246,240천원(연평균 49,248천원) 감소예상**

□ 간접산출을 통한 자체추계

○ 추계접근 방안

- 수집가능 정보⁵⁾를 토대로 인구구성비를 활용⁶⁾한 간접적 산출

○ 추계전제

- (수입액) 2024년도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입⁷⁾ 기준

- (감면대상) 서울시 거주 23~64세 남성 중 면제⁸⁾ 등을 제외한 제대군인 수를 토대로 서울시민 전체 대비 비율인 **약 25.2%**⁹⁾를 산출

○ 산출내역

- 총 세입감소액 = 246,240천원

$$= \text{연평균 세입감소액}(49,248\text{천원}) \times \text{추계기간}(5\text{년})$$

- 연평균 세입감소액 = 49,248천원

$$= \text{입장료 연평균 수입감소액} + \text{개인연습사용료 연평균 수입감소액}$$

$$= 12,584\text{천원} + 36,664\text{천원}$$

- 4) [제대군인 관련 자료협조 문의결과] 국가보훈부 문의결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전역 후 등록된 자에 대한 통계(지원대상 파악용)만 보유하고 있고, 등록하지 않은 제대군인에 대한 통계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
 ⇒ 참고로 e-나라지표의 제대군인 현황은 매년 전역하는 자의 통계로 제대군인 총 인원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, 이에 현황통계 문의결과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 제대군인(등록자)은 약 12,000명(2025. 3월 기준)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됨
- 5) [수집가능 정보]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
 - 2025년 23~64세까지 서울시 남성 현황 : 2,945,418명 ⇒ 산식(2,945,418명 × 면제율)을 통해 대상규모 추정
- 6) [인구구성비를 통한 간접산출] 2024년도 서울시립체육시설 수입액을 토대로 인구구성비를 활용하여 간접산출
 ⇒ 다만,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·사용자의 성별, 연령별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아 실감소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7) [미고려사항] 입장료·개인연습사용료가 없는 2개 시설(구의·신월야구장) 및 자립형 민간위탁시설 2개소(효창운동장·산악문화체육센터)는 추계대상에서 제외
- 8) [면제율 적용] 1980년대~최근까지 면제율(현역 및 보충역이 아닌 자에 대한 비율)이 상이하어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평균적인 면제율을 적용(평균 20%)하여 산출
 ⇒ 최근의 경우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이 5%내외이지만 과거 1980년대(64세 기준 1961년생-)의 경우 30%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산출하였기에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(병무청 자료 등)가 확보될 시 현 추정액과 달라질 수 있음
- 9) [수혜대상] 인구구성비 활용

$$= \frac{① \text{ 2025년 23~64세 남성 수} \times ② \text{ 면제율}}{③ \text{ 서울시민 전체 수}} \times 100$$

※ 산출요소 정보

- ① 2025년 23~64세 남성 수 : 2,945,418명
- ② 면제율 : 80%(입의가정)
- ③ 서울시민 전체 수 : 9,335,734명

※ 연평균 시설별 세부추계 내역¹⁰⁾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구 분	2024년 수입액	전체 시민 중 23~64세 제대군인 남성비율	감면비율	수입감소예상액
합 계	합계	584,842			49,248
	입장료	99,875	25.2%	50%	12,584
	개인연습사용료	484,967	25.2%	30%	36,664
잠실종합 운동장	소계	382,551			30,627
	입장료	33,858	25.2%	50%	4,266
	개인연습사용료	348,693	25.2%	30%	26,361
목동종합 운동장	소계	26,675			2,851
	입장료	16,567	25.2%	50%	2,087
	개인연습사용료	10,108	25.2%	30%	764
서울월드컵 경기장	소계	24,050			3,030
	입장료	24,050	25.2%	50%	3,030
	개인연습사용료	-	25.2%	30%	0
고척 스카이돔	소계	126,166			9,538
	입장료	-	25.2%	50%	0
	개인연습사용료	126,166	25.2%	30%	9,538
장충 체육관	소계	25,400			3,200
	입장료	25,400	25.2%	50%	3,200
	개인연습사용료	-	25.2%	30%	0

자료 :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

○ 산출한계 및 부대의견

- 임의가정을 통한 산출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0) 세부추계내역의 경우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천원이하 금액 반올림 표시에 따라 전체금액 수치와 일부 차이 날 수 있음
⇒ 참고로 전체금액의 경우 시설 전체 수입액 합외 25.2%에 해당하는 수에서 해당 감면비율(50% 또는 30%)을 곱하여 산출함